



보 도 자 료

보도	2023. 6. 30.(금) 조간 (인터넷, 통신, 방송 등의 경우 2023.6.29.(목) 12:00부터 보도 가능)	배포	2023. 6. 29.(목)
----	--	----	-----------------

담당부서	공익업무부	하성철 팀장 (☎ 3702-8605)
	홍보부	이웅노 팀장 (☎ 3702-8582)

법원과 동일한 분류 체계로 정비하는 등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거듭납니다 -

[주요 내용]

- 손해보험협회(회장 정지원)는 소비자의 신뢰도와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
 - 소비자의 신뢰도와 탐색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법원 손해배상(과실상계) 재판실무편람과 동일한 분류 체계로 개편하였으며,
 - 활용률이 낮거나 분쟁 발생의 소지가 있는 기준을 재정비하고 기준별 설명과 판례를 추가·보완하여 소비자 이해도를 제고
 - 그리고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통·법률·보험 전문가의 자문과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 데이터·판례 경향 분석 및 도로교통법 개정, 교통환경 변화 등을 반영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을 통해 사고 당사자의 과실 비율 이해도 제고 및 원만한 합의에 도움을 주어 과실 분쟁의 예방 및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개정 주요내용

- ① **(소비자 신뢰도·편의성 제고)** 소비자의 신뢰도와 탐색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법원 「손해배상(과실상계) 재판실무편람」과 동일한 분류 체계로 개편

[소비자 신뢰도·편의성 제고(일부예시)]

기 존	개 정
□ 자동차와 자동차의 사고 ① 직진 對 직진 사고 ② 직진 對 좌회전 사고 ③ 직진 對 우회전 사고 ⋮ ⑫ 긴급자동차 사고 등 12개 분류 ☞ 특별한 체계없이 사고상황을 나열하여 소비자의 탐색 난이도 高	□ 자동차와 자동차의 사고 ① 교차로 사고 ② 마주보는 방향 진행 중 사고 ③ 같은 방향 진행 중 사고 ④ 기타 유형 사고(주차장 등) ⑤ 이륜차 특수유형 등 5개 분류 ☞ 법원과 동일한 체계로 개편하여 소비자 탐색 난이도 ↓, 편의성 ↑, 신뢰도 ↑

- ② **(소비자 이해도 제고)** 활용률이 낮거나 분쟁 발생의 소지가 있는 기준을 재정비하고 기준별 설명과 판례를 추가·보완하였으며 일본식 한자어를 순화하는 등 소비자의 이해도를 제고

[소비자 이해도 제고(일부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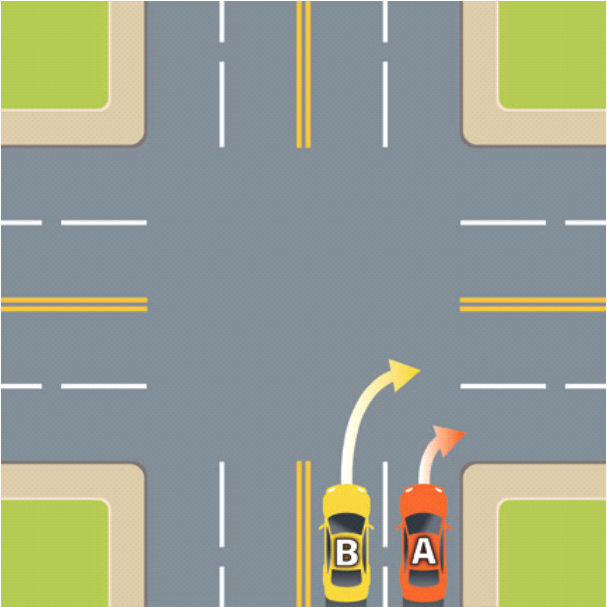
기 존	개 정
사행(蛇行), 갈지(之)자 보행	ㄷ자 보행
노건(路肩)	갓길
지근(至近)거리, 근접(近接)거리	가까운 거리
기(既) 좌회전	좌회전 완료 직후

③ **(공정성·합리성 제고)** 교통·법률·보험 전문가의 자문과 「과실비율 분쟁 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 데이터·판례 경향 분석 및 도로교통법 개정, 교통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고 일부 과실비율을 조정(총2건)

① 녹색 직진 신호 비보호 좌회전 사고의 경우 법원 판례의 경향을 반영하여 좌회전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80%에서 90%로 상향하고, 경우에 따라 100%까지 조정할 수 있게 개정

비보호 좌회전 차량 과실비율 상향			
차2-6 기준(舊213-1)		기본 과실비율	
	(기존)A80 : B20	(개정)A90 : B10 ※판례 경향 반영	
	과실비율 조정예시(일부)		
	조정사유	조정폭	조정결과
	A차량의 신호불이행, 지연	+10(A)	A100 : B0
	B차량측 비보호좌회전 표지 없음	-10(B)	
B차량측 시야 제한	-10(B)		
사고 설명	녹색 직진 신호등에 비보호 좌회전하는 A차량과 마주보는 방향에서 녹색 직진 신호등에 직진하던 B차량 사이에 발생한 사고임		
과실비율 수정사유	기존에는 기본 과실비율을 A차량 80%, B차량 20%로 정하였으나, 최근 판례의 경향은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주의의무를 과거 대비 다소 높게 판단하는 것으로 확인하여 A차량 90%로 조정함		
과실조정 보완	A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진입했거나, B차량 진행 방향에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없는 경우로 상대방 A차량이 비보호 좌회전을 하리라고 예상하기 어렵거나, 교차로진입 대기 차량 등으로 시야가 제한되는 경우 등에는 손해발생이나 확대와의 인과관계를 확인하여 A차량 10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보완함		

- ② 교차로 동시 우회전 사고의 경우에도 법원 판례의 경향을 반영하여 안쪽 회전 차량의 과실비율을 30%에서 40%로 조정

동시 우회전 사고 과실비율 조정		
차20-1 기준(舊247(가))	기본 과실비율	
	(기준)A30 : B70	(개정)A40 : B60 ※판례 경향 반영
	과실비율 조정예시(일부)	
	A,B차량의 우회전 방법 위반	+10
	A,B차량의 무리한 끼어들기, 진로방해	+10
	A,B차량의 명확한 선진입	-10
사고 설명	동일방향으로 동시(또는 유사한 때)에 오른쪽(안쪽)에서 우회전하는 A차량 과 왼쪽(바깥쪽)에서 우회전하는 B차량 이 충돌한 사고임	
과실비율 수정사유	기존에는 안쪽에서 우회전하는 A차량 의 회전반경이 작기 때문에 다소 선진입한 것으로 보았으나, 최근 판례의 경향을 반영하여 양 차량 동시 진입으로 보고 A차량 기본 과실비율을 40% 로 조정함	

향후 계획

- 협회는 개정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과실비율정보 포털(<http://accident.knia.or.kr>)에 게시하고 보험사·공제사 및 주요 법원에도 배포할 예정으로,

- 동 인정기준이 사고 당사자의 과실비율 이해도 제고와 원만한 합의에 도움을 주어 과실 분쟁의 예방 및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또한 추후 트램(노면전차) 등 새로운 교통수단의 도입에 대비하여 과실비율 기준을 마련하는 등 교통사고 관련 분쟁 예방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

※ (별 첨)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현황 1부. 끝.

- (개 요)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정도를 나타내는 과실비율에 대하여 법원 판례, 법령, 분쟁조정 사례 등을 참고로 만들어진 국내 유일의 공식기준
- (근 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15 표준약관」의 「별표3 과실상계 등」에 따라 마련
- (연 혁) 자동차보험 보상 실무에 참고할 목적으로 1976년에 최초 도입하였으며, 2000년부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상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인정기준의 활용 근거를 마련하여 총 10차례 개정
 - * ('92.11.) 1차, ('94.8.) 2차, ('96.10.) 3차, ('99.7.) 4차, ('04.8.) 5차, ('07.12.) 6차, ('15.8.) 7차, ('19.5.) 8차, ('22.5.) 9차, ('23.6.) 10차 개정
- (역 할) 표준화된 기준 제시를 통해 과실비율의 예측가능성 제고, 사고 당사자간 합의 및 신속한 보상을 통한 분쟁발생 예방, 자동차보험 제도의 안정성 확보를 통한 신뢰도 제고 및 사회적 비용 절감
- (원 칙) 신뢰의 원칙*(주의의무 이행) 및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 (손해배상의 기본원칙)
 - * 타인이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다는 신뢰하에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
- (현 황) 총 239개 사고유형별 기준 마련(정형 201개, 비정형 38개)

(단위 : 개)

구 분	인정기준 수	비 고
차 對 보행자	38	정형
차 對 차(이륜차 포함)	108	
차 對 자전거(농기계 포함)	55	
소 계	201	
차 대 PM(개인형 이동장치)	38	비정형*
합 계	239	

*비정형 기준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정형)에 공식적으로 포함시키기 전에 소비자 등이 미리 참고할 수 있도록 사전예고·공개하는 기준으로, 향후 법률 개정, 법원 판례 등을 통해 효용성이 높아지는 경우 정형 기준으로 포함 예정

① 과실비율이 궁금하시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및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을 참고하세요.

- 보험회사, 공제사는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및 판례 등을 참고하여 과실비율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 손해보험협회는 소비자께서 과실비율을 참고하실 수 있도록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과실비율정보포털(http://accident.knia.or.kr)

과실비율정보포털

과실비율의 이해 과실비율 인정기준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자료실 과실비율 법률상담

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별조회

보행자, 자동차(이륜차), 자전거(농기계) 중 선택

횡단보도, 고차로, 진행방향 등 선택

신호 지시 중앙선, 진로변경, 앞지르기 등 선택

직진, 좌회전, 우회전 유턴 등 선택

일부 인정기준 세부사항 추가 선택

② 목록조회 | ③ 기준 번호검색

③ 목록조회(사고유형을 클릭하세요)

자동차와 보행자의 사고

자동차와 자동차의 사고 (이륜차 포함)

자동차와 자전거의 사고

③ 기준 번호검색(예시)차2-1

검색

④ 기준 검색 순위[직전 30일]

순위	과실비율	사고 유형	건수	비율
1위	차43-2	후행 직진 대 선행 진로변경	519,618건	5.7%
2위	차41-1	양 차량 주행 중 후방 추돌(앞차량 정지)	328,707건	3.6%
3위	차51-1	통로주행 대 주차구역 출차	243,300건	2.7%
4위	차42-2	일반 도로 가장자리(갓길포함) 주·정차	235,954건	2.6%
5위	차12-1	우측도로 직진 대 좌측도로 직진(동일쪽)	176,000건	1.9%

더보기 +

⑤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심의진행 조회

① 심의접수번호

2019

② 차량번호

① 심의접수번호는 가입하신 보험사 및 공제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회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합의(분쟁 해소) 9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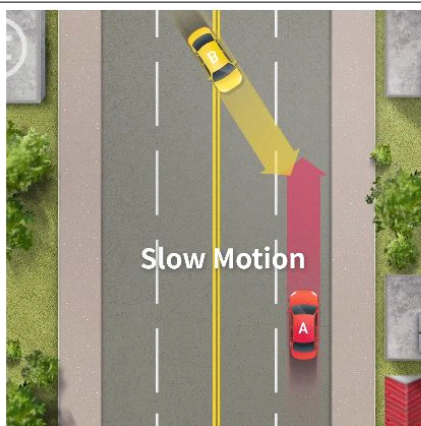
상세내용 클릭

과실비율 인터넷 상담

Go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건의함

Go



사고 상황

적용(비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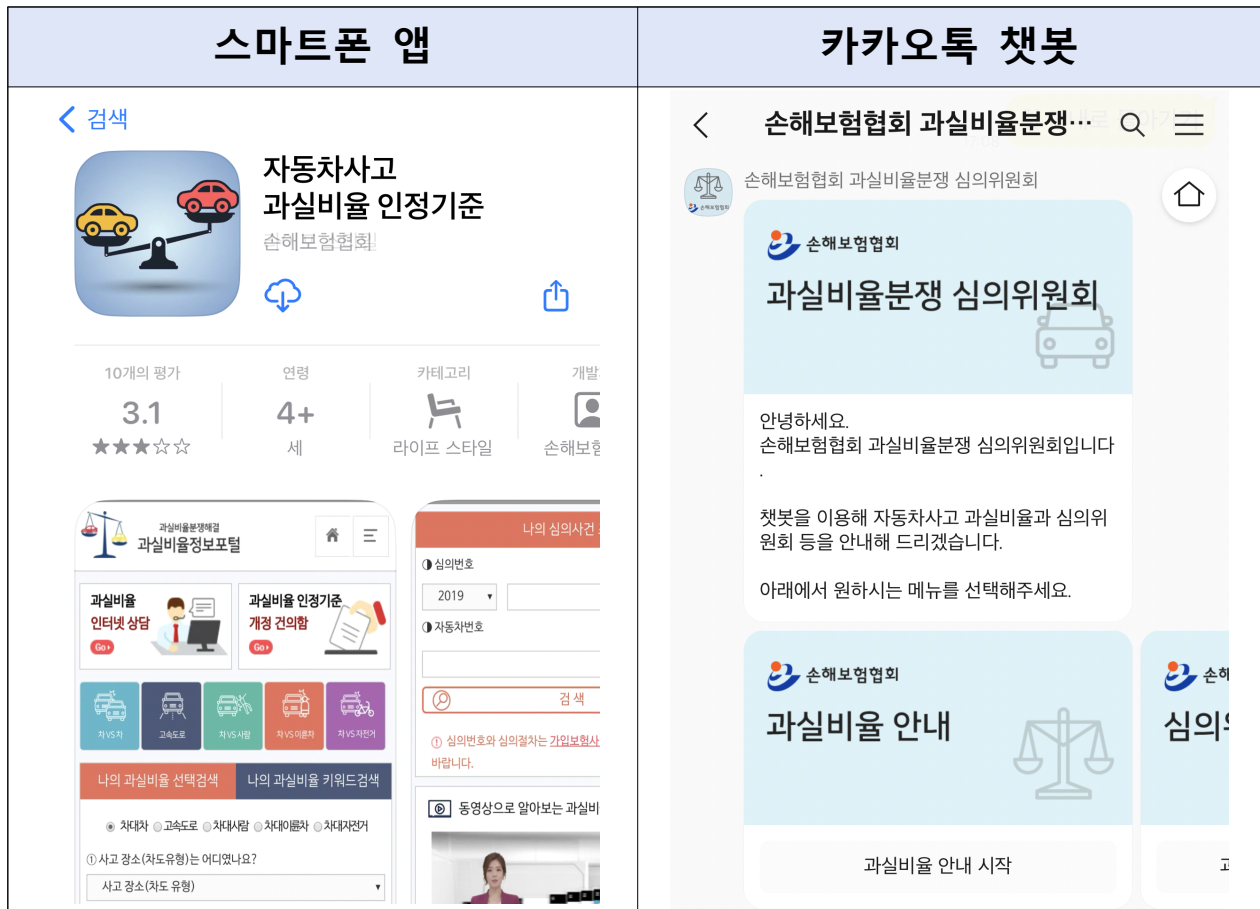
기본과실 해설

◎ 도로에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좁은 도로폭 등으로 인해 양 차량이 계속 주행하기 위해 부득이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가야 하는 골목길 또는 이면도로에서 서로 마주오면 A차량과 B차량이 교행하다가 충돌한 사고이다.

과실비율	수정요소해설	관련법규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50 : B50		
사고상황	자동차A : 직진 자동차B : 맞은편 직진		
적용과실	A50 B50		
가감요소			
☐ A 올라가는 차량	10	0	
☐ A 가상의 중앙선 침범	10	0	
☐ A 현저한 과실	10	0	
☐ A 중대한 과실	20	0	
☐ A 일방통행 위반	30	0	
☐ A 정지	-10	0	
☐ A 회피	-10	0	
☐ B 올라가는 차량	0	10	
☐ B 가상의 중앙선 침범	0	10	
☐ B 현저한 과실	0	10	
☐ B 중대한 과실	0	20	
☐ B 일방통행 위반	0	30	

② 스마트폰 앱 및 카카오톡 챗봇을 이용해 더욱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 앱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및 카카오톡 챗봇 ([http:// pf.kakao.com/_euLTs](http://pf.kakao.com/_euLTs))을 통해서도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과실비율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③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심의신청은 보험사를 통해, 과실비율 관련 문의·상담은 손해보험협회를 이용하세요.

- 사고 당사자 간 과실비율 합의가 어려우신 경우, 보험사*를 통해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하세요.
*가입하신 보험사의 보상 담당 직원 등에게 요청
- 인터넷** 및 전화**를 이용해 손해보험협회 전문가(변호사, 전문상담역)와 과실비율 관련 문의·상담이 가능합니다.
*과실비율정보포털 과실비율 인터넷 상담(<http://accident.knia.or.kr/qna>)
**손해보험협회 통합상담센터(02-3702-8500 다음 ④번(과실비율 상담))